

2020년도 제2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10.(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8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61건(안건번호 제2020-147545호~14797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47545호, 147546호는 상업용 저작물의 각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모두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7547호~147550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모두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7551호는 우리말 자막파일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3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튜브' 게시 '영상'에 대해 '구글'에 삭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1호~7호)
 - 회의결과: 원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의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의 예외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소지는 있으나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자가 민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튜브의 개별 영상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글에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각 안건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8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차 회의록 6쪽에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전차 회의록 4쪽에 블로그 프로필 내용, 6쪽에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회사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제2호 안건은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블로그 프로필 내용,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회사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유튜브 영상 불법

성 심의 회의 부분인 9쪽~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 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NTV', '미국 CWTV', '넷플릭스', '미국 Showtime', '워너브러더스', 'MBN', 'Microsoft Corp.', 'TV조선', '(주)한글과컴퓨터', 'tvN', '채널A'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6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7545호, 14754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심의 대상 게시물은 웹하

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를 판매하고 있음. '◆◆◆◆◆ ◆◆◆◆'은 권당 4,500원에 '○○○ ○○○○○'는 권당 5,500원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 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7545호, 14754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를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A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7545호, 14754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7547호~14755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심의 대상 게시물의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심의 대상 게시물은 모두 최근에 방송된 영상 저작물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 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7547호~14755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내국민대우 및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B 위원: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7547호~14755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755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4화, 1화~4화의 자막파일을 압축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심의 대상 게시물의 영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10일의 간격을 두고 방영 중이고 ‘♣♣♣’에서 다시보기로 이용할 수 있음.

심의 대상인 자막 파일 게시글 내용에 “☆ ☆☆☆☆☆ ☆☆ ☆☆☆ ☆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막게시자가 직접 자막을 제작해서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추정됨.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와 국내외 판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로서는 자막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고의성 여부, 사이트의 영리적 목적 여부, 자막 제공자의 사건 외 자막 배포의 규모, 심의 대상 자막파일이 교육용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판매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시정권고의 소극적 요소로서는 한글 자막 제작은 원본 DVD, 블루레이 자체에서 제공한 번역 자막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닌 한, 번역자의 창작적 개성이 나타나는 독자적 2차적 저작물이라는 점, 영상물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 한글 자막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물의 팬이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번역한 경우일 수 있다는 점, 권리자측이 특별한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서 권리자가 아닌 제3자 민원인이 신고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 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755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게재된 광고는 없음.
- B 위원: 해당 블로그에 자막 파일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는데 파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권리자가 특별한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은 최근 저작물에 대한 것으로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에도 해당됨. 게시물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요소 배제 요인이고, 블로그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자막 파일 중 국내 합법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장기간 남아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는 불법복제물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자막은 지난 1기 심의위원회부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

하였음.

소극적 요소가 3가지 있는데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3가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A 위원: 애니박스에서 해당 애니메이션을 자막과 함께 방송 중이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관리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문제 될 사안임.
- D 위원: 일본 애니메이션이 불법 복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지?
- B 위원: 게시글의 댓글을 보면 “♡♡ ♡♡♡♡♡”라는 내용이 있어서 불법 복제되어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막과 결합해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 D 위원: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일본어, 할리우드 영화는 영어로 제공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말로 자막이 제작된 것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문제를 삼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듦.
- B 위원: 해당 블로거가 한 화 전체를 번역해서 자막 파일을 제작한 것으로 창작물이라고 생각되어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D 위원: 금번 심의 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 중 저작권 침해 고의성 여부, 자막 배포의 규모에 해당되고 소극적 요소 중 번역자의 창작적 개성이 나타나는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A 위원, B 위원: 추가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147551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7552호~14797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영화 '미녀와 야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330포인트에 판매중임. 2017. 3. 16. 개봉한 디즈니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의 실사판 영화이며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5,500원에 이용가능함.
(영화 '파파로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144포인트에 판매중임. 2013. 3. 14. 개봉한 국내 영화로 미스터트롯

TOP 7 중 한명인 성악가이자 가수인 김호중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47552호~14797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만화,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A 위원,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7552호~14797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47551호는 전체위원회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20-147545호~147550호, 147552호~14797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0-1호~7호는 원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의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의 예외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소지는 있으나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자가 민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튜브의 개별 영상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글에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안건은 모두 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2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17.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